

##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안)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p><b>접도구역 관리지침</b></p> <p>제정 '81. 8.27    운영 460-18157                      개정 '82.12.30    운영 460-25997                      개정 '85.12. 9    운영 3051-24220                      개정 '87.11. 2    운영 30510-23463                      개정 '89. 8.17    운영 30510-19077                      개정 '90.10.25    도관 30510-27869                      개정 '91.11.16    도관 30510-31884                      개정 '93. 9.20    도관 58710-1051                      개정 '99. 9. 3    도관 58710-800                      개정 '01.10.17    도관 58710-903                      개정 '02. 6. 3    도관 58710-413                      개정 '02.12.26    도관 58710-948</p> <p><b>1. 목 적</b>                      이 지침은 <u>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2. 용어의 정의</b>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u>도로법 제25조의 규정</u>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p>	<p><b>접도구역 관리지침(안)</b></p> <p>제정 '81. 8.27    운영 460-18157                      개정 '82.12.30    운영 460-25997                      개정 '85.12. 9    운영 3051-24220                      개정 '87.11. 2    운영 30510-23463                      개정 '89. 8.17    운영 30510-19077                      개정 '90.10.25    도관 30510-27869                      개정 '91.11.16    도관 30510-31884                      개정 '93. 9.20    도관 58710-1051                      개정 '99. 9. 3    도관 58710-800                      개정 '01.10.17    도관 58710-903                      개정 '02. 6. 3    도관 58710-413                      개정 '02.12.26    도관 58710-948                      개정 '13. 1.    <u>도로운영과 -</u></p> <p><b>1. 목 적</b>                      이 지침은 「<u>도로법</u>」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와 「<u>고속국도법</u>」 제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2. 용어의 정의</b>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u>도로법</u>」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p>	<p>○ 인용조문 정리</p> <p>○ 인용조문 정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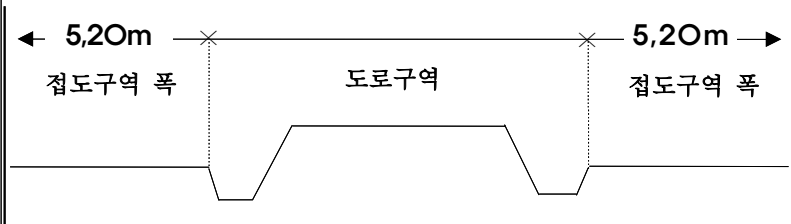
<p>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준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p> <p>다. “측도”라 함은 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p> <p>라. “측구”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p> <p>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u>건축법 제2조</u>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3. 접도구역의 지정</p> <p>가. 지정대상 도로</p> <p>(1) 고속국도</p> <p>(2) 일반국도</p> <p>(3) 지방도</p> <p>(4) 군도</p> <p>나. 지정권자</p> <p>(1) 고속국도 : <u>건설교통부장관</u></p> <p>(2) 일반국도 : <u>건설교통부장관</u>(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p> <p>(3) 지방도 : 도지사</p> <p>(4) 군도 : 군수</p> <p>다. 지정기준</p>	<p>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준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p> <p>다. “측도”라 함은 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p> <p>라. “측구”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p> <p>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u>건축법</u>」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3. 접도구역의 지정</p> <p>가. 지정대상 도로</p> <p>(1) 고속국도</p> <p>(2) 일반국도</p> <p>(3) 지방도</p> <p>(4) 군도</p> <p>나. 지정권자</p> <p>(1) 고속국도 : <u>국토해양부장관</u></p> <p>(2) 일반국도 : <u>국토해양부장관</u>(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p> <p>(3) 지방도 : 도지사</p> <p>(4) 군도 : 군수</p> <p>다. 지정기준</p>	<p>○ 인용조문 정리</p> <p>○ 인용조문 정리</p> <p>○ 직제 개정</p>
---	--	--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 각각)	비 고
고속국도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 접도구역 지정 보기



(2) 지정의 예외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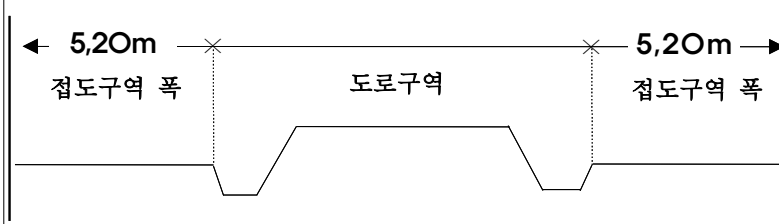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 각각)	비 고
고속국도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 접도구역 지정 보기



(2) 지정의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 인용조문 등 정리

<p>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p> <p>2) <u>당해</u>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u>도시계획구역</u>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u>도시계획구역</u>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p> <p>3) <u>당해</u>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u>도시계획구역</u>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u>도시계획구역</u>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p> <p>※ <u>도시계획구역</u>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p> <p><u>도시계획법</u>에 의하여 <u>도시계획구역</u>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u>동법 제31조</u>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p> <p><b>(3) 지정 폭 조정</b></p>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p> <p>(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u>공유수면관리법</u>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p> <p>(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p> <p><b>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b></p>	<p>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p> <p>2) <u>해당</u>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u>도시지역</u>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u>도시지역</u>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p> <p>3) <u>해당</u>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u>도시지역</u>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u>도시지역</u>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p> <p>※ <u>도시지역</u>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p> <p>「<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u>도시지역</u>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u>같은 법 제83조</u>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p> <p><b>(3) 지정 폭 조정</b></p>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p> <p>(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u>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u>」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p> <p>(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p> <p><b>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b></p>	<p>○ 인용조문 등 정리</p> <p>○ 법령 정리</p>
--	--	-----------------------------------

<p>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u>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u>와 <u>고속국도법 제8조</u>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p> <p>(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p> <p>(가) 지정시기</p> <p>사업시행구간은 <u>도로법 제25조</u>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p> <p>(나) 해제시기</p> <p><u>도로법 제25조</u>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p> <p>(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4. 접도구역의 관리</p> <p>가. 관리책임자(<u>도로법 제9조</u>)</p> <p>(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p> <p>(2) 일반국도·지방도·군도 : 도지사(시장·군수)</p> <p>나. 관리책임자의 임무</p> <p>(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p> <p>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p>	<p>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u>도로법</u>」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u>고속국도법 제8조</u>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p> <p>(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p> <p>(가) 지정시기</p> <p>사업시행구간은 「<u>도로법</u>」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p> <p>(나) 해제시기</p> <p>「<u>도로법</u>」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p> <p>(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4. 접도구역의 관리</p> <p>가. 관리책임자(「<u>도로법</u>」 제20조)</p> <p>(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p> <p>(2) 일반국도·지방도·군도 : 도지사(시장·군수)</p> <p>나. 관리책임자의 임무</p> <p>(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p> <p>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p>	<p>○ 인용조문 정리</p>
---	--	------------------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별지 32호의2 서식)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별지 제32호의3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별지 제32호의4 서식)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별지 32호 서식)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p>한다.</p> <p><b>(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유지건설사무소장의 임무</b></p> <p>(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p> <p>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p> <p>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p> <p>(나) 국토유지건설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다. 관리상태 확인·점검</b></p> <p>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p> <p><b>가. 금지행위(도로법 제50조)</b></p> <p>(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p>	<p>한다.</p> <p><b>(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소장의 임무</b></p> <p>(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p> <p>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p> <p>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p> <p>(나) 국토관리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다. 관리상태 확인·점검</b></p> <p>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국토해양부장관</u>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p> <p><b>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9조)</b></p> <p>(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p>	<p>○ 직제 개정</p> <p>○ 인용조문 정리</p>
--	--	---------------------------------

<p>는 행위</p> <p><b>나. 허용행위</b></p> <p><b>(1) <u>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u> 정한 사항</b></p> <p>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u>신축</u>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p> <p>(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p> <p>(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u>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u>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p> <p>(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p> <p>(마)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p> <p>(바) <u>도로에 연하지</u>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p> <p>(사)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u>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u>국토이용관리법에</u>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u>농어촌정비법에</u>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p> <p>(아) <u>문화재보호법에</u> 의한 문화재의 수리</p> <p>(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p> <p>(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p>	<p>는 행위</p> <p><b>나. 허용행위</b></p> <p><b>(1) <u>도로법 시행령 제46조에</u> 정한 사항</b></p> <p>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u>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u>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p> <p>(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p> <p>(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u>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u>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p> <p>(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p> <p>(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p> <p>(바) <u>도로와 잇닿아 있지</u>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p> <p>(사)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51조 제3항에 따른 <u>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u> 또는 「<u>농어촌정비법</u>」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p>(아) 「<u>문화재보호법</u>」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p> <p>(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p> <p>(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p>	<p>○ 인용조문 정리</p> <p>○ 문구 정리</p> <p>○ 인용조문 정리</p>
--	--	--



<p>는 공작물의 설치</p> <p>(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u>도로의 노면의</u>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 구역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p> <p>(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u>시계</u>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p> <p>(파) <u>기타 건설교통부령이</u> 정하는 행위</p> <p><b>(2)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b></p> <p>기타 <u>건설교통부령이</u>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p> <p>(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u>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u> 이전하는 행위</p> <p>(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u></p> <p>(마)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p> <p>(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p> <p>(사)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p> <p>(아)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u>아닌 것에 한한다</u>)의 설치</p> <p>(자) 마을도로 및 <u>농로</u>의 보수행위</p> <p>(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p> <p>(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별가리개를 설치</p>	<p>또는 공작물의 설치</p> <p>(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u>도로 노면의</u>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p> <p>(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u>시계(視界)</u>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p> <p>(파) <u>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u> 정하는 행위</p> <p><b>(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행위</b></p> <p>기타 <u>국토해양부령이</u>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p> <p>(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u>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u> 이전하는 행위</p> <p>(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u></p> <p>(마)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p> <p>(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p> <p>(사)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p> <p>(아)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u>아닌 것만 해당한다</u>)의 설치</p> <p>(자) 마을도로 및 <u>농로(農路)</u>의 보수행위</p> <p>(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p> <p>(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별가리개를 설</p>	<p>○ 문구 정리</p> <p>○ 인용조문 정리 및 직제 개정</p> <p>○ 문구 정리</p>
--	---	--

<p>하는 행위</p> <p>6. 보 고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별지 제33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u>건설교통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7. 기 타  이 지침은 <u>2003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치하는 행위</p> <p>6. 보 고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u>국토해양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7. 기 타  이 지침은 <u>2013년 1월 00일부터</u> 시행한다.</p>	<p>○ 개정 지침 시행일 명시</p>
---	---	-----------------------

## 법령발취

### 도로법('12.6.1 개정)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4.10>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달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도로법

-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1. "대지(垵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도로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22, 2012.6.1>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2012.6.1>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